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8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2. 제안이유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조의2제1항제15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

4항 및 같은 항 제6호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3호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5호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나.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2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20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례 소관 부서와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미대상(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은 서울시 예산담당과-2507(2019.3.1.)호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이 추진되었음.

- 우리구의 조례 현황은 표1과 같음.

: 개정대상 조례 9개 중 1개는 개정 완료되어 대상은 8개 조례임

표1 우리구 자치법규 중 감면규정 신설 및 정비대상 현황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 고
1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9.05.09	
2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진흥 조례	'19.05.09	
3	주차관리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9.05.09	
4	지역경제과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19.07.19	
5	아동청년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07.19	
6	행정지원과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07.19	
7	문화체육과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07.19	
8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9.07.19	
9	문화체육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07.19	'19.12.31. 전부개정

※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19.12.31)으로 감면규정 기삭제

- 할인대상 및 대상시설 현황은 표2과 같음

표2 할인대상 및 대상시설 현황

연 번	할인대상	대상시설	할인율	비 고
1	사용료	주차장, 청소년시설, 기업시민청 종합청사 편익시설, 금나래아트홀 문화체육시설	10%	
2	수강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 해당 자치법규 부칙에 유효기간 규정

: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유효기간이 지난 감면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 혼란 방지

: 자치법규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나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효력을 상실한 감면규정이 구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정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

표3 정비대상별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정 비 대 상	자치법규명
1	수강료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2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20조제3항
3	사용료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4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2제1항제15호
5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같은 항 제6호
6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7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8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항 제4호

다.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이므로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우리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의견제시 사례 1부.
2. 관계법령 1부.

<u>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u>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김지혜
연 락 처	2627 - 1367

붙임 1 의견제시 사례(의견15-0228)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15-0228, 2015. 8. 28., 충청남도]

[질의요지]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 345.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345. 참조), 하나의 일괄개정안에는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묶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을 묶어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다수 조례를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다수 조례의 일괄개정 추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 회신, 의견 11-0172 참조).

다수 규칙을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조례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를 요청한 사안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일괄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들이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거나, ‘지방보조금’과 같이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문구를 삭제할 경우 혼란이 예상(‘지방보조금’에서 ‘지방’을 뺄 경우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혼란이 예상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치법규에서도 해당 용어에 ‘지방’ 문구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지방’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안의 경우에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조례는 조례별로, 규칙은 규칙별로 각각 그 개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